

● 1988년 7월 1일 발행
● 발행인 / 이호재
● 발행처 / 한국여성민우회
● (1/2)0 - 0000
서울 서대문구 중정로
3가 30-6
● ☎ 313-1060
● 값 / 500원

함께 기로여성

1988
7
통권 제11호



올림픽이 열린다.

'올림픽 XX일전' 'XX일전' 하며 숨가쁘게 달음질쳐가는 이 '꿈의 내일'은 이제 벌써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와 있다. 마스게임에 동원되어 비지땀 흘리는 어린 학생들의 모습과 자원봉사를 한다는 배움직한 중년 여인네들의 얼굴이 신문에 자주 등장한다. 서울시내 도로변 곳곳의 전물들도 갖가지 칠단장에 요란하다.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이 올림픽은 이미 생활이다. 노점상 전면단속 아니면 뒷골목 허용, 이런 승강이속에 가슴괴며 하루하루가 가고 그리고 여전히 시장은 열리고 여인네들은 물건을 사고 팔며 북적댄다.

이런 우리들에게 올림픽은 과연 무엇인가.

젊은 학생들은 이 올림픽에 남북한이 하나로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한발 앞당기자고 한다.

올림픽과 통일?!

왜 올림픽이 지금 이 땅에서 열리게 되었는지, 왜 지금 유독 통일이 이야기되고 있는지, 이제 우리 국민 모두가 곰곰 생각해볼 때가 되었다.

사진: 한상근

목차

- 2 생활속의 실천 / 외국말 쓰는 사람 미워하기
- 3 이렇게 생각한다 / "우리의 소원은 통일"
- 여성만평 / 깃발만 나무라
- 4-5 취재 / 통일의 길 "왜 '공동올림픽'인가?"
- 6 현장의 소리 / 고대현의 임시적 아주머니들
- 7 현장의 소리 / 미션이들은 이종은씨
- 8-9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 팀장 / 대안광학 · 웨스트북 은행
- 10-11 집중점검 / 고아수출 1위

- 12-13 보고서 / 학생들이 본 돈봉투 잠깐!! / KBS 시청료기부운동 그후
- 14-15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 이렇게 바꿔야 한다
- 16-17 이달의 소식 / '지상학생우정제' 및 '질교육실천대원' · 한국여성개발원
모자복지법 시안 발표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추진대회
- 18 여성민주상담실 / 신재희는 평균임금 계산을 정확히
- 19 독자독후감 / '남영동'
- 남말맞추기
- 20 계서관 / 직장내 폭력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이 경숙 님께서 기증하셨습니다.

외국말 쓰는 사람 미워하기



"내 보이프렌드는 첫 미팅에서 만났는데 내게 애프터를 했던 사람이야"

"어제 아이쇼핑 하다 까뜨리네뜨에서 아주 드레시한 원피스를 봤어"

"이글스 팀은 이번 시즌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매끄러운 플레이를 펼쳐 경기를 시종 리드했습니다"

모두가 흔히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화이다.

그러나 이런 햄버거가게에 들어가 보면 또 어떨까?

"치즈 햄버거 원피스, 오렌지 주스 투피스 플리즈"

"당류"

일단 주머니 사정 때문에라도 이런 고급음식점에 들어가기 힘들겠지만 혹 'X X X 햄버거' 등 온통 호화찬란하게 영어 이름으로 되어있는 가게에 들어가본 사람이라면 다들 점원들의 이런 대꾸에 어안이 빙빙돌았을 것이다. 우리나라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는 이들.

이쯤되면 누구든 문제를 느낄 만하다. 이 가게에선 무슨 올림픽 대비 영어회화 연습이라도 하고 있던 말인가?

또 어디 그뿐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를-개중에는 저질스런 욕설도 있다- 영어문자를 잔뜩 앞뒤로 붙이고 다니는 젊은이들...

온 국민이 매일 영어회화 실습?

우리가 매일 같이 듣고 보고 쓰는 외국말을 몇분야에서라도 한번 살펴보자.

▲ TV 방송에서: '쇼 비디오 자키' '코미디 하이웨이' '전격 Z작전' '퀴즈 아카데미' '스튜디오88' '가요비디오' '카운트 다운 방송유폴픽'

▲ 상품에서: '프랑' '프라이드' '시몬스 침대' '시프그린' '리카바' '레이드' '후레시 브라운' '까뜨리네뜨' '코코넛 쿠키' '오프론 전자시계' '뉴인나' '나인 투 나인'

▲ 운동경기에서: '그라운드' '올림픽'

버' '찬스메이커' '포지션' '오프사이드' '에이스' '플레이오프' '어시스트' '리그' '플레이'

언어는 사람을 지배한다

그러나 이 거슬리는 외국말을 쓰지말자고 할 때 우리는 꼭 벽에 부딪힌다.

예를 들면 'TV' 처럼 도저히 다른 말로 부를 수 없는 외국말이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서 우리는 외래어와 외국말을 분리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외래어는 본래 외국말이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이제 우리말화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말은 단지 외국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외래어를 쓸 수밖에 없는 경우와 외국말을 남용하는 것과는 다른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외래어를 양산해내는 건 아닌가도 싶다. 'TV' 같은 말도 우리가 조금만 성의를 기울인다면 다른 좋은 우리말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또 'TV'는 너무 처음부터 굳어져서 어렵다면 적어도 '카운슬링'으로 변해가는 '상담'이란 말을 되찾는 일. 여기에서부터라도 출발할 수 있지 않을까? 혹 왜 때마침 국수주의마냥 우리말만을 부르짖는다고 반박할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홀몰트라는 학자의 말을 들려주고 싶다.

"모든 언어에는 거래의 열과 전통이 담겨 있어 정서와 사유, 감정까지 지배한다"

게다가 요즘 떠도는 외국말은 어떤가?

외국말 뒤에는 유형·무형의 상품이 반드시 따라오고 그 상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취향·정서를 다 바꿔놓아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정치구조, 그리고 미래를 뒤흔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찍이 6,7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불어 순화운동이 정부 차원에서 전개됐고 독일 역시 마찬가지로 라틴어·불어 등의 외래어를 순수한 독일어로 바꿔쓰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얼마전 통일문제를 다룬 방송에 '동아리연합회장'이란 학생이 나왔다. 알고보니 '동아리'는 학생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서클'의 우리말이었다. 우리것을 찾겠다는 학생들의 노력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외국말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은 꽤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각 대학의 국어운동모임들, 또 한글학회의 노력도 있었다. 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생활문화 두레 '질경이' 같은 모임도 있다. 이 모임에서는 우리말에서 한발 더 나아가 84년부터 '우리말 입기 발표회'까지 개최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조그마한 움직임들이 큰 힘을 갖지 못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모든 국민이 말·생활의 주인인 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인식하고 함께 고쳐나가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외국말을 쓰면 벌칙을 주자

① 자신의 말속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쓰던 외국말을 발견해낸다.

② 다른 사람의 말중 외국말이 나올 때는 지적해준다.

③ 가능하면 친한 집단끼리 공동의 약속을 한다. 어겼을 경우의 벌칙을 정해 실천하는 것도 좋겠다.

④ 거의 외래어화된 외국말들을 다른 좋은 우리말로 바꿔보고 주위에도 권해본다.

⑤ 외국말 상표의 상품을 사거나 외국말로 된 가게에 갔을 때는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만으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인 대안 마련을 함께 요구해야 한다.

① 언어사용에 영향력이 큰 언론매체의 외국말사용에 대해 제도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정부 차원에서 국어순화에 관계된 위원회를 두어 외국말의 표준 우리말표기를 정해야 한다.

이런 요구들이 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우리것을 아끼는 사람들'의 '생활속의 실천'이 필요하다. ■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불러왔다. 이 노래가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절박하고 구체적인 현실문제로 바짝 다가왔다. 강대국의 분할점령 아래 동족상쟁의 치욕적인 체험과 두동강난 국토와 민족분열에도 불구하고 통일에의 염원은 단절될 수 없었으며 이렇게 노래로써 표현되어 왔다. 그런데도 반공의 장벽 때문에 그 노래는 막연한 허공을 향해 울려 퍼지는 감상적인 절규로서만 느껴졌었다.

그러나 이제 이 절규는 우리들의 삶과 직결된 현실속에 해결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로 다가온 것이다.

국민의 요구나 참여를 억누른 채 집권자들 사이에서 채택된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도 16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 성명은 남북간 대립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여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자는 원칙과 정신을 천명하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은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의 통일운동을 촉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분단된 양체제를 유지시키며 집권연장을 위한 안보강화에 이용당하고 말았다. 민중의 참여없는 독재정권에 의한 통일정책은 오히려 민족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의 염원을 배반해온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통일을 지향하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에서 젊은층의 남북학생 체육회담의 요구나 기독교교회협의회 등의 통일방안에 관한 성명을 통해 민간단체들의 요구와 참여가 표출되는 것은 참으로 자연스럽고 당연한 발전인 것이다. 민족의 통일은 집권자들에 의해 독점적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며 그것은 진정한 통일이 될 수도 없는 것이다.

허리가 잘린 채 한민족공동체로서 피가 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유롭게 숨도 못쉬고 가족과 친지들의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이 병신스럽게 살아온 우리들이다. 이제는 한민족·한혈족으로서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만남이 먼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고향산천과 친족이 전쟁의 폐허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아 새로워졌는지를 보고 그동안 태어나서 새롭게 자란 젊은세대를 만나 혈족의 관계를 재확인하는 인간관계의 회복이 앞서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동족을 적대시하는 반공체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중국과 소련에서 살고 있는 동포들의 인간적 삶의 실상을 그동안 마스크를 통해 방영한 것과 같이 북쪽의 동족들이 살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효재 (민주회 회장)

있는 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마스크를 통해 알려야 할 것이다.

지금껏 전쟁준비에 광분해 있는 침략자로서나 간첩과 괴물의 형상으로서만 비춰진 북한동포들의 모습에서부터 생겨나는 공포와 적대감을 먼저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변화가 와야 할 것이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분단구조의 유지를 위한 반공교육을 기반으로하여 개인적 출세·성공을 조장하는 경쟁위주의 입시준비교육이 되어왔다. 이 한반도에 태어난 자녀들에게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가르치면서 민족의 재결합과 통일에의 꿈을

키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위한 젊은세대의 책임과 역할을 생각케하는 교육은 지금껏 전무했었다.

통일을 위한 준비를 우리여성들은 특히 가정교육을 통해 시작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어린이들이나 동포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기보다 함께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동족으로서 친근하게 느낄 수 있게해야 할 것이다. 행여 분단된 조국에 대한 도피로 해외이민이나 유학을 준비시키기보다 통일세대로서의 이상과 실력을 기르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자녀양육을 담당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학부모로서 통일을 이룩할 세대를 길러내기 위해 민족·민주교육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백두산을 향한 대행진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학생들의 이러한 젊은이다운 외침을 위협스러운 불장난으로만 보고 외면하거나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집권자들의 통일을 실천하려는 의지와 희망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것은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의 요구와 참여를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더우기 우리 모두가 주인이 되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이룩하려는 민주화의 노력이 각계층의 참여로써 시작되어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통일사회를 건설하려는 민족운동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여성들은 가정과 지역사회의 주인으로서 그리고 생산에 참여하는 노동자로서 통일을 위한 대행진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

여성만평



깃발만 나부껴

그림·박경미



왜 '공동올림픽'인가?

장영석 (『말』지 기자)

'6·10남북학생회담'은 정부당국의 원천봉쇄조치로 좌절되었지만, 잊혀져가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켜 놓았다.

'6·10회담'을 계기로 하여 표출된 정부당국과 학생·재야 간에 대립된 점들은 몇가지로 요약된다. ▲ '관주도하의 대화창구 일원화'와 '민간주도하의 대화창구 다변화' ▲ 공동올림픽개최 불가와 공동올림픽개최 등이며, ▲ 학생들이 통일운동에 반미운동을 결합시켜 나가려 했음에 비해 정부당국은 이를 저지하려 했던 점 등이다.

관 주도나 자주적 교류나

정부당국은 학생들이 통일문제 심포지움 개최, 북한 바로 알기 운동 등을 전개해나가는 가운데, 5월 31일 서울시내 17개 대학이 모여 '조국의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특별위원회'연합을 구성하여 '6·10회담' 준비를 위한 조직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자 6월 3일 '무분별한 통일논의의 중단' 방침을 이종남 검찰총장을 통하여 발표토록 하였다. 이러한 방침과는 달리 "젊은이들의 진취적인 통일

논의를 수렴하겠다" (노태우대통령 「한국일보」와의 특별회견 88.6.9)는 견해도 피력하였다. 정부당국의 통일문제 대책 중 '통일논의 개방'의 방침은 '무분별한' 통일논의, 소위 '용공과경적' 통일논의는 탄압하고 관이 주도하는 '건전한' 통일논의는 개방하겠다는 뜻을 알 수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방침에 대해 "조국통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 철폐하라"라는 구호로 맞서고 있다.

학생들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가보안법은 1980년 12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반공법을 흡수통합하여 의결한 법률이다. 따라서 국보위의 정당성 때문에라도 늘 문제시 되어왔다. 또 합법성과 정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개정국보법이 그 적용과정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은 정권유지를 위한 탄압의 수단으로 입법된 것이 아닌가 의심케 하고 있다. 보안법의 조항중 제7조가 가장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법조인들은 "7조 찬양·고무·동조 등의 불명확한 개념은 그 범주를 무제한하게 확장할 수 있도록 되어 남용의 우려

가 크며, 나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 자'라고 함에 있어서 이롭게 하는 기준 역시 불명확하여 판단의 자의성이 우려된다"고 말한다.

지난 제5공화국 시절 수많은 민주인사·학생들이 민주화를 요구하다가 소위 '과경·용공'으로 몰려 이 법에 걸려 구속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86년 유성환의원이 '반공국시보다는 통일국시' 주장이 문제가 되어 구속된 것도 바로 이 법에 저촉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제6공화국이 출범하면서 이러한 탄압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지난 5월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의 일환으로 이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책에서 발췌하여 북한의 여성생활을 대자보에 실었다해서 연세대 총학생회장 이은희(24·철학3)씨가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어 구속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순수한 학술심포지움 논문을 문제삼아 검찰이 충북대학의 서관모 교수를 소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검찰은 "실정법에 위반되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 실정법이 바로 국보법이다.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현정권이 반공·승공국시에 집착하여, 통일국시를 채택하고 이에 준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한 정부당국의 통일의지 표명은 의심을 받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학생들은 '창구일원화'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두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광주학살, 부정부정으로 태어난 현정권은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민중의 통일에 대한 열망을 수렴하기 보다는 탄압하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둘째, 남북관계에 관한 정책을 하나에서 열까지 미국수성과 대사관의 지시와 조종을 받는 현정권으로서 대북협상에서 분단을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다" (6월 18일 대토론회에서 김중기군 발제문)

반미와 결합된 통일운동

"민족통일 가로막는 미국놈들 몰아내자"

"휴전협정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6·10회담'의 전과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외쳤던 구호중 하나이다.

최근 미국이 농수산물수입·담배수입을 강요하는 등 경제적 압력에 한국이 굴복해온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다. 그렇지만 남·북한의 통일이라는 정치·군사적인 문제까지 미국이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6·10회담'의 전과정에 학생과 미국은 공식·비공식 반응을 몇차례 보았다. 지난 3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때 회장후보로 나섰던 김종기군이 처음으로 남·북한학생체육회담을 제안했을 때 주한미대사관이 김종기군의 당선 가능성을 신중히 타진한 점, (『신동아』88·6) 또한 학생들이 반문점 사용요청을 주한유엔군사령부에 요청했을 때 "한국정부의 일이지 주한미군이냐 유엔군사령부의 일이 아니다"라고 성명을 발표한 점, 그리고 6월 9일 필리핀 오를리 미국무성 대변인이 "남북한 인적 교류는 정부당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논평한 점 등이다.

학생과 미국의 이러한 현상적인 모습만으로는 서로의 행위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 한·미 간의 정치적·군사적 관계는 보다 역사적이다. 우선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휴전협정을 보도록 하자.

전쟁발발 3년 1개월만에 체결된 이 협정은 유엔군측 수석대표 해리슨 중장과 조선인민군 대표 남일 간에 서명되어 12시간 후부터 현재까지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당시 이승만대통령은 "일체의 지휘권을 이양하게 된것을 기쁘게 여기며...그 지휘에 들어가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군사적전권을 유엔군에 넘겼기 때문에 남한의 협정당사자는 유엔군으로 되어 있다. 이 사항은 아직까지도 변동이 없다. 결국 이로 인해 지금까지 정전회의에는 북한대표와 유엔군대표가 참석, 남한측은 옵저버로만 참석한다. 또한 당시 체결된 협정이 '휴전' 협정이기 때문에 한반도는 항상 긴장되어 있어 '평화' 협정을 체결해야 하며 협정체결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가 창설됨으로써 유엔군 사령부가 가지고 있던 한국군의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6월 7일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한·

미연례안보회의에서 오자복 국방장관과 칼루치 미국부성장관은 "휴전 협정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합의한 바 있다.

휴전협정중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제 1조 10항을 살펴보도록 하자.

제10항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는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진다.

이로 미루어보아 반문점 사용허가요청에 대해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식의 성명은 한국을 군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실을 눈가림하기 위한 태도임이 드러난다.

이러한 군사적 예측은 종종 정치적 독립성을 상실하게 한다. 최근 필리핀에서는 주미 (RTH) 미군주둔군에게 기지 사용료를 12억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음에 반해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비로 매년 19억달러씩 배액을 주고 있는 실정(87.5.7 국방부 발표)이다. 실제 한·미행정협정(1966년에 체결된 주둔군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유지비는 미군측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도 한국측이 이를 '간접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미 굴욕적인 외교자세에 비판이 일자 정부당국은 "이들 문제삼을 경우 한미안보협력에 차질이 올 우려가 있고, 그 자체를 재고하기에는 때가 늦었다"(『한겨레신문』88.6.5 유광석 외무부 안보과장)고 말하였다.

학생들은 한국의 대미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종속현상을 설명하면서 "미국은 해방자요 구원자가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지배자요 배격해야 할 제국주의국가"(전대협 산하 평화적 조국통일촉진 학생추진위원회 편 『우리는 결코 둘일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동올림픽』 공방

올림픽은 '순수한 스포츠행사'이기 때문에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모두가 참가하여 인류대화합을 이룩해야 한다고 정부당국은 주장한다. 그러나 정부당국의 이러한 주장 이면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는 것도 사실이다.

"88서울올림픽은 한마디로 남·북한간에 치열하게 전개된 체제경쟁에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나타낸 실증적 결과다"(국토통일선, 『통일교육자료』 제32집)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당국은 대결의 논리에 입각하여 올림픽 서울유치에 힘써 왔음을 알 수 있다.

대결의 관점에서 남북한 관계를 풀어

가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정부당국은 "88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나타날 중·소공산대국의 대한민국 관계변화에 상응하여 미·일 양국의 대북한관계도 상당한 변모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반도 주변강국에 의한 남북한교차 접근이 가속화되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같은 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힘과 대결의 논리에 입각하면 남북관계는 절대로 풀리지 않으며,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학생들의 주장이다.

학생들은 7·4남북성명에서 발표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사상·이념 체제보다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우선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번 올림픽을 남북이 화해할 수 있도록 남한이 북한의 주장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생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정부당국과 IOC측은 IOC헌장제34조 '모든 경기는 올림픽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도시의 메인스타디움이나 그 근처에서 거행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공동개최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당국의 이러한 태도에 대해 학생들은 "공동개최안은 사실 올림픽헌장에 위배됩니다. 그러나 올림픽헌장은 고정불변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 민족 7천만이 공동올림픽을 주최하고자 하면 대부분의 나라들도 공동올림픽을 지지할 것입니다"(6월18일 고려대 토론회, 김종기군의 발제문에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세계는 바뀌는데 유독 우리만...

지금 세계는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신데탕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동서 양진영이 신데탕트 무드 속에서 핵무기 감축을 협의하고 소련과 미국은 정치·경제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지만 분단국가인 중공과 대만 역시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대만 언론인이 중공의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취재하고, 상호 서신교환, 경제적 교류도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오직 남·북한만이 세계적인 평화기류를 타지 못하고 군사적 긴장을 강화하고 체제우위론적 대결논리에 입각하여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한 학생들의 노력이 아무소용 하나 의 결실을 맺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분단 44년의 한이 풀릴 수 있도록 갈망할 뿐이다. ■



현장의 소리/고대병원 임시직 아줌마들

우리는 고려대부속 구로병원 영양과에 소속된 임시직 아줌마들이다. 우리는 하루 13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하는 일도 정식직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나 임금차별·상여금·미지급 등 차별 대우가 심하였다. 또한 6개월 지나면 승급(A, B, C급)된다는 고용사의 약속과는 달리 몇년 근무해도 승급이 되지 않고 정식직원으로 채용되는 것도 매우 힘들었다.

지난해 8월 우리병원에도 노조가 생겨 임시직인 우리도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병원측은 우리를 무시하여 우리의 대표로 대의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했을 때 '식모 주제로 감히 이런 자리에 참석하다니'라는 태도를 보여 우리를 분노케 했다.

임시직의 재계약 기간은 매년 3월, 9월. 정식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우리의 요구가 계속되자 병원측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올해 3월 1일자로 6명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하였지만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도 시행되지 않았다. 우리는 영양과 과장에게 건의하고 아줌마들의 서명을 받으며 화답을 듣고자 했는데 결국 회사측으로부터 받은 대답은 '윗사람들이 정식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무시당하며 살 수 없다. 끝까지 투쟁하여야 한다'고 다짐하고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아줌마들의 도장을 받고 해화동 병원 아줌마들과 의논하며 우리의 힘을 모아갔다.

5월 2일 오전 10시 총무과장·영양과 실장에게 화답을 듣고자 우리 30명은 식당으로 모였다. 몇달이나 시간을 두고 화답을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과는 달리 그들은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조금만 양보하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한술 더 떠서 농장에서 풀썩던 임시직 아저씨를 정식직원으로 채용했더니 풀을 안뽑으려 했다는 이야기까지 하며 빈정대며, 빨리 화답을 듣고 점심준비를 하려던 우리는 도저히 물러설 수 없게 되었다. '우리가 정식직원이 되면 총무과로 물러가 당신들의 켤대를 뺏을까 겁나며 아줌마들은 흥분하였고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모두 뜻을 합하여 농성에 돌입하였다.

악통으로 만든 복을 두드리며

농성을 시작하자 총무과 직원들은 사전을 찍으며 우리를 위협하였지만 '병원에 들어와 죽어라 일만 하었는데 이렇게 사진도 찍어주어 고맙다'고 그들을 비롯하여 주었다. 그들은 농성을 풀면 요구를

임시직도 당당한 조합원 이다

지난해 8월 우리병원에도 노조가 생겨 임시직인 우리도 노조원으로 가입하였다. 그러나 병원측은 우리를 무시하여 우리의 대표로 대의원이 단체교섭에 참석했을 때 '식모 주제로 감히 이런 자리에 참석하다니'라는 태도를 보여 우리를 분노케 했다.



들어주겠다고 설득을 하였지만 화답을 한 서류를 보여 달라는 우리의 요구에는 대답 못하면서 가족들에게 우리를 데려가라고 협박하는 치사한 방법까지 썼던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가족들은 일이 성사될 때까지 참아달라는 우리의 양해를 받아 들어 병원측의 협박에 동요하지 않고 격려해주어 많은 힘이 되었다. 가족의 도움외에 각 병원노조들의 격려방문도 계속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뜻이 일치된 것은 아니다. 30명이 시작하였지만 병원 관리자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해고의 위협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정식직원이 된다는 이유로, 몇명의 아줌마들이 농성에서 빠져나가기도 했다. 같이 농성을 시작한 해화병원 아줌마들과 우리에게 상대방이 농성을 풀었다는 이간질을 시켜 해화병원은 구두 화답만 받고 3일

만에 농성을 풀기도 하였다.

식당일이 마비되자 관리직이 총동원되어 우리일을 대신하게 되었지만 환자들에게는 한편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병원측이 14일까지 직원들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지정해 놓은 표를 게시한 것을 보고 우리도 평의식량 한가마니를 마련하여 장기간에 대비하였다.

5월 7일 동물실험실 기공식이 있었다. 병원장을 비롯한 많은 관리직이 참석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나갈 수 있는 통로를 모두 막아놓았지만 식당유리에 우리의 요구를 적어놓고 목이 터져라 노래부르며 악통으로 만든 복을 두드렸다. 이 일이 있은 후 근로감독관이란 사람이 와서 '쟁의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아줌마들은 법에 저촉된다'고 위협하고 갔다.

5월 9일 결전의 날이 왔다. 근로감독관은 의료원이 우리를 고소했다며 종이 몇장을 흔들어 보이며 또다시 왔다갔고 관리자들이 계속 들락거려 수상한 움직임을 보였다. 오후 2시 '5살 먹은 어린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오라'는 방송이 나왔다. 우리는 무심히 들었으나 노조 사무장은 이 방송이 구사대를 모으는 신호라고 알려주었다.

해화병원 직원으로 구성된 2백50명의 구사대가 들어와 우리를 끌고 가려 하였으나 우리는 절대 끌려가지 않겠다고 항의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복을 치며 끝까지 버티나갔다.

구사대가 들어온다는 연락을 받고 온 30명의 고대학생과 휠체어를 탄 환자와 보호자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우리는 외롭지 않았다. 7백~8백명의 지지서명을 받아온 보호자가 있었고 우리를 지지해 주다가 강제퇴원당한 환자도 있었던 것이다.

6시 30분 우리의 대표인 노조위원장과 병원측이 합의, '임시직의 조합원 자격 인정·근로기준법 준수·점차 정식직원으로 채용·쟁의중 임금지급' 4개사항에 도장을 찍었다.

우리는 많은 양보를 하여 바로 정식직원이 되지는 못하였지만 조합원 자격이 정식으로 인정된 것에 큰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병원측은 7일간의 투쟁을 인정해서가 아니고 원래 자기들이 이렇게 해줄 계획이었다며 우리를 계속 무시하는 발언만 하고 있다. 이제는 노조와 함께 합의사항의 시행여부를 지켜보아야겠다. 병원측도 더이상 우리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

"어디 다니느냐"하고 물을 때 "미쓰이 물산"이라고 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일단 "아하—"하고는 부러운 눈치를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외국인 회사라고 하면, 세련된 사무집기에 주 5일 근무, 또 여타 권익옹호를 위한 제도들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마치 대한민국내에 있는 무슨 별천지 같이 느껴지는 게 보통의 감각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직접 그속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단지 허우대만 멀쩡할 뿐 그 알맹이는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로 봐 차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한국인 직원은 평생 하인"

나는 올해로 이 회사를 12년째 다니고 있다. 그러나 직장일을 알면 알수록, 또 전체 사회를 바라보면 볼수록 맨처음 입사 당시 가졌던 호사스런 기대감이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외국인들과 한 직장에 근무한다는 데서 오는 묘한 우월감은 전작에 입사 직후에 깨졌지만 오히려 날이 갈수록 우리 한국인 직원들이 꼭 일본인의 하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를 쉽게 떨칠 수가 없었다.

우리 회사 한국인 직원들은 지난 6월 20일 드디어 그 소리없던 생각들을 밖으로 펼쳐내기 시작했다.

'불법 노조탄압 즉각중지' '종신하인제 철폐' '승진동결제 철폐' '임금동결제 포기' '연공해고 포기' 등을 요구하며 태평로에 있는 프레스센터 9층 사무실에서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우리의 요구사항을 들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되묻는다.

"연공해고가 뭐니까?"

우리 회사엔 한국인 80여명, 일본인 37명이 일하고 있는데 이중 한국인은 공(功)이 있을수록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이가 들었다고 하여 나가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비묘아 '연공(年功)해고'라고 부른다.

지난 83년에는 부장대리로 일하던 이 용대씨(당시 50세)가 20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 일이 있었다. 이씨는 미쓰이물산이 우리나라에 상륙한 65년 국제전신전화국에서 일하다 특채되어 텔레스칼에 근무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텔레스칼을 비싸게 구입했다'고 트집이 잡혀 임금이 40% 깎이더니 이제부터 회사내 우편물을 수거·분류하는 일을 하라고 어이없는 명령을 받게 된 것이다. 분노와 수치를 이겨내지 못한 이씨는 당연히 직장을 그만뒀다.

이런 일은 비단 이씨만의 일이 아니다.

"연공해고가 뭐니까?"

부장급 이상은 전부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부(副)부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그나마 그것도 실권없는 꼬리표들에 불과하다. 모든 결정권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쓰이물산에서 한국인은 평생 하인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 눈치를 채고 그만두게도 하고 또 영영 승진을 안시키니 자의반 타의반 나가기도 한다.

부장급 이상은 전부 일본인이고 한국인은 부(副)부장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 그나마 그것도 실권없는 꼬리표들에 불과하다. 일본인은 30대가 공장 부장대리로 시작하지만 한국인은 50대가 되어야 부장대리를 바라볼 수 있고 이도 연공해고제에 막혀버린다. 모든 결정권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미쓰이물산에서 한국인은 평생 하인일 수밖에 없다.

실적제 임금제에도 문제다.

우리회사 노조는 지난해 3월 17일 주한 일본인총합상사로는 처음으로 단체협약을 맺었지만 올해 2월 회사측은 이를 접대기로 만드는 대폭적인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직원 개인의 업무를 일본인 관리자들이 자의적으로 평가, 임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 그것.

언뜻 능력대로 받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실적제 임금제도는 어떻게든 회사측에 잘보이려 하게 만들어 한국인들의 단결을 약화, 노조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이기에 우리는 지금 파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미쓰이물산은 세계 1백30여군데에 지점을 갖고 있는 막강기업으로 이곳 미쓰이물산 한국지점은 일본의 섬유, 금속, 기계, 식료품 등을 한국기업이 수입하도록 중개해주고 수수료를 챙겨 연간 10억 달러의 배당금을 올린다. 말하자면 요즘 한창 자본자유화다 뭐다 해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다국적기업인 것이다.

일은 한국인이, 돈은 외국인이 챙겨

마침 우리가 파업을 시작하기 전후해서 지금껏 감춰져만 왔던 외국인회사내의 한국인차별대우가 크게 문제시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갑고도 한편 착잡하다. 신문에 보니 웨스트레이크에서는 대개가 여성인 조합원들을 14시간이나 감금했다고도 하고 또 프랑스대사관에선 노조가 만들어지자 그 보복으로 임금을 30~1백50%까지 정말 엇장수 맘대로 차등인상 했다고도 한다.

알고보니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이란 게 있어서 외국인회사들은 이렇게 공공연한 노조탄압을 하고서도 별 처벌을 받지 않는 모양이다. 정부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이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고 있으며, 이에 편승해 외국인회사들은 한국인 직원의 노동권을 부인하거나 인정한다 해도 임금을 미끼로 회유, 분열시키고 갖가지 노조파괴활동을 자행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우리의 망망대해에 어린 무수한 돈들이 해외로 흘러간다. 신문을 읽어보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은행 지점이 벌써 54개나 된다는데 작년 한해 올린 순이익은 무려 1천68억원이나 되어 국내 7개 시중은행의 순이익 8백3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일은 한국인들이 죽어라 하고 돈은 외국인들이 챙겨가는 구조...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

우리같은 외국인회사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제 이 문제는 단순히 외국인회사 직원들만의 문제는 아니게 된 것 같다. 국민 모두가 '지금 우리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철저히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하여 진정 기쁜 마음으로 내 민족 내 일터를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

직장내 폭력추방운동

3월부터 본회가 벌여온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은 특히 그중에서도 구사대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전사회적인 차원의 운동이 되어가고 있다. 본회는 최근 크고 작은 폭력사태들을 접수 혹은 취재하면서, 이제 단순한 고발이 아닌 근본적 극복방안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7월 7일 공개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20면 참조). 여기에는 직장내 폭력을 당했으면서도 이를 곳곳이 이겨내고 있는 두 직장 탐방기를 실는다: 편집자주

탐방 1 대한광학

새벽, 노동자 숙소로 날라든
구사대 화염병

구사대 폭력으로 사무실벽이 다 무너졌다.

6월 19일의 극적인 타격으로 '62일간의 승리'를 쟁취한 구로공단 대한광학은 활기와 생기가 넘쳐 들뜬 분위기였다. 정문을 들어서자마자 게시판에 붙어 있는 합의내용이 보인다. '현 노조인정' '최소한 인원을 7백명 이상으로 유지' '기본급 5만원 인상, 상여금 5%로 인상, 가족수당 지급' 점심시간이어서 식당에 모인 노동자들은 떠들썩하니 농성 중에 있었던 일들을 주고받고 있었고 노조사무실은 비품들을 정리하는 노동자들로 왁자지껄했다.

대한광학은 코니카쌍안경을 생산하는 아남산업계열의 회사. 경영부실을 이유로 7백명중 4백명을 감원시키겠다는 회사측에 맞서 노조원 4백35명은 4월 19일부터 새로운 노조집행부(위원장 황천수)를 구성하고-전 집행부는 회사측의 인원감축안에 합의도장을 찍은 어용이었다- '인원감축반대,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었다.

신문에도 크게 났지만 6월 6일의 구사대폭력은 끔찍할 정도였다. 이날 새벽 5시경 계열회사인 아남정밀의 관리자,



6월 11일 광화문 아남직매장 앞에서의 항의시위

회사측의 회유에 넘어간 노동자들과 노란 헬멧을 쓴 정채불명의 남자-일명 백골단- 2백여명이 덤프트럭으로 정문을 부수고 들어와 철야농성중이던 노동자들을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로 마구 때렸다. 이들은 농성노동자들의 숙소였던 전 화학과에 일부러 화염병을 던져 불을 내고 노동자들을 쾅터만 남긴 채 옷을 벗기고 오랏줄로 손을 뒤로 묶고 짓밟았다.

이 새벽작전에는 경찰도 공공연히 개입했다. 현장에서 남부서 경비과장이 무전기들 들고 외부와 연락을 취했고 대한광학 담당형사는 구사대와 같은 복장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또 전경 중대장은 끌려나온 노동자 60여명을 대기시켜 놓은 미니버스에 실었다.

이날의 폭력으로 4명이 입원했고 위원장 황천수씨가 구속되었다.

그러나 구사대폭력에 대한 분노가 광배해진 가운데 일어난 이 사건은 도리어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폭력을 당한 노동자들에게 더욱 많은 지원을 보내게 한 계기가 되었다. 민통련을 비롯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산업선교회 등 26개 단체는 6월 7일 '대한광학 노동조합 구사대·경찰폭력사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명서발표, 아남산업·남부경찰서

항의방문, 아남산업 앞에서의 지원집회 등을 가졌다.

여연은 6월 11일 '아남산업은 구사대 폭력도 생산해 내는가'라는 전단을 내고 11일 광화문 아남직매장, 12일 명동성당 앞에서 피켓을 들고 가두홍보를 벌였다. 오후 12시 30분에 시작된 이 홍보전에는 민우회, 여성노동자회, 민주화운동청년연합 여성부, 기독교민회, 여학생대표자협의회 등 연인원 50여명이 참가하여 전단을 배포하고 "아남산업은 노동자들과의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구속된 노동자 석방하라" "구사대폭력 사주·비호한 나정환사장, 남부경찰서장 즉각 처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런 활동들에 힘입은 대한광학 노동자들은 끝내 뚝뚝 등쳐 6월 19일 농성 62일만에 전폭적인 승리를 이뤘던 것이다.

62일 농성을 함께 이겨낸 아주머니들

대한광학노조원중 기혼여성노동자는 26명. 이들중 20여명은 62일간의 농성을 끝까지 함께 해 조합원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 아주머니들중 두분을 만났다.

84년 강원도에서 올라와 그해 10월부터 대한광학에서 일하고 있다는 박필순씨(44)와 85년 시골에서 올라오자마자 바로 대한광학에 취직했다는 3남 1녀의 어머니인 한영례씨(44).

박필순 아주머니는 쌍안경 중간에 들어가는 프리즘을 검사하는 일을 하는데 하루종일 불빛에 비추는 작업이라 눈이 안좋단다. 한영례 아주머니는 신나로 렌즈 닦는 일을 한다.

"입사하자마자 노조에 들어있어요. 노조는 노동자 위해 있는거니까 당연히 들어야죠"

한영례 아주머니는 첫월급이 6만3천원이었다며 멋지게 웃는다. 현재는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잔업하면 22만원정도 받는다.

"4월 19일 인원감축에 반대해서 농성한다는 것을 알았는데 회사에 가려니까 이상하대요. 그런데 나이 어린 것들이 밤이나 제대로 먹는지 걱정이 돼서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두 아주머니는 21일부터 회사에 나와 식당에서 밥을 해주면서 농성기간을 보냈는데 그래서 노래는 못배웠단다. 집에 일이 있어 2~3일씩 빠졌다고 미안해하는 박필순 아주머니는 저녁때는 집에 가서 밥을 해야 돼서 농성장을 나와야 했는데 총각이 항상 "아줌마, 내일도 꼭 나오세요" 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아프

더라고 농성기간중 아주머니 20여명은 계속 함께 행동했고 2~3번 정도는 철야농성도 했다 한다.

“노조 집행부가 구찰자석방과 인원감축철회를 요구하며 공단내거리와 아남산업에서 삭발을 했을 때는 속으로 울었어요”

또 아남산업에서 규찰대장인 신연우가 경찰 7명에게 맞고 도리어 업무방해죄로 구속되는 걸 봤을 때는 정당하게 요구하는데 왜 매 맞고 구속돼야 하느냐 싶어 힘없는 사람의 슬픔을 느꼈다고 박필순 아주머니는 말한다.

“6월 6일 아침에 식당총각이 집에 와서 구사대가 들어왔다고 알려줬어요. 막 뛰어서 공장입구 사거리까지 오니까 노란 모자를 쓰고 쇠망치 든 남자 5명이 서있었어요. 놀라서 멈춰서 있었더니 경찰 봉고차에 애들이 실려가면서 엉엉 울더군요”

“평생 추억이 될 거예요. 학생들 데모하는 거 보면 부모생각 안한다고 그랬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이해가 돼요”

고3인 아들이 “할 때는 해야 된다”고 말해줘 힘을 얻었다는 한영래 아주머니는 아남산업에서 전경을 보고 “우리 데려 갈까냐, 당신들이 우리들 먹여살릴거냐”고 했더니 전경도 웃더라고 전한다.

“62일이 6년 2개월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남부서·동부서에서 대한광학 노동자들에게 질렸다고 한대요. 힘을 동쳤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6월 6일 폭력현장과 잡혀가는 애들을 보고 하도 신경을 썼더니 머리가 아프다고 말하는 박필순 아주머니는 “임금이 올라도 내년까지는 잔업이 없다는데 남편, 아들 둘과 어떻게 살지 걱정”이라며 좋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대산처럼 가로놓여있는 살림걱정을 털어놨다.

6월 18일 이 터무니없는 감금사건 역시 직장내 폭력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이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17명밖에 안되는 노조원들의 외롭고 끈질긴 싸움은 계속되고 있었다.

“사실 생산직노동자들의 임금수준에 비한다면 외국인은행 직원들의 임금이 낮다고 말하긴 부끄럽지요. 하지만 우리가 평균연봉 8백50만원인데도 불구하고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하는 것은 우리 사무직도 노동자라는 의식과 함께 보일 듯말 듯 교묘한 민족분열책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웨스트팩은행은 호주 최대의 은행으로 세계 60위이며 외국지점은 1백28개. 한국에는 86년 5월에 처음 문을 열었는데 88년 상반기 순이익만도 21억원이라 한다.

연대투쟁 후 호주인지점장 입건

웨스트팩은행 노조는 임금인상보다도 ‘차등임금인상의 철폐’를 최우선 요구로 내걸고 있었다. 은행측 마음대로 직원 개인의 근무평점을 매기고 이를 근거로 임금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을 무기로 소수 외국인이 다수 한국인을 지배하려는 정책이라고 농성장을 지키던 노조원들은 입을 모았다. 최고 21%에서 최저 3.4%의 차별적 임금인상은 한국인을 분열시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원들은 6월 15일 호주대사관 앞에서, 6월 17일에는 힐튼호텔-은행측은 힐튼호텔에서 변칙영업중이다-에서 항의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었다. 17명의 외로운 농성은 마침내 원군을 얻어 사흘뒤인 6월 21일 오후 6시 30분 광화문 경희궁 시민공원에서는 ‘웨스트팩은행 노조탄압 규탄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 대회에 참석한 3백여명은 ‘주한 외국은행 노조협의회’ 소속 37개 외국은행 한국인 노조원들, 이들은 웨스트팩은행의 노조원 불법감금사태와 노사협상에 있어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항의하고 노조의 정당한 요구조건의 즉각수락, 현 스프링 지점장의 교체 등을 요구하며 공동대처를 결의했다.

실제 이 여파로 스프링 지점장은 25일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기혼여성 노조원이 10명이나 되는 웨스트팩은행 노조원들은 ‘정부특혜와 변칙영업’으로 살찌면서도 민족적 우월감으로 한국인을 대하는 외국은행들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결의를 다지고 있다. ■

탐방2 웨스트팩은행

“해볼테면 해보라” 14시간 감금



농성중인 엄마를 찾아온 꼬마



17일 힐튼호텔-앞에서의 항의농성

5월 28일 각 일간지들은 웨스트팩은행의 노조원 감금사건을 크게 보도했다. 최근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등에서 나타났던 노동자 납치·감금사건이 이제 외국인은행에서까지 일어난 것이다.

웨스트팩은행 노조원 17명은 5월 26일부터 동방플라자 7층 사무실에서 ‘임금인상과 차등임금인상의 철폐’를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자 농성이틀째인 27일 저녁 7시경 호주인 지점장 등 간부 7명은 농성중인 노조원들을

안에 파들 채 유일한 출입구인 자동개폐 유리문을 밖에서 걸어잠갔다. 그리고는 “해볼테면 해보라”고 웃으면서 유유히 내려간 것이다.

대부분 여성이었던 노조원들은 그로부터 14시간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는 고역속에서 통곡을 해야 했다. 민족적 모멸감, 한국인 간부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이들 17명은 처를 떨었다.

또 이보다 앞서 이날 2시경에는 노조원들이 바다에 붙여 놓은 대자보위에서 지점장인 휴 스프링(40)씨가 댄스춤을 추는 오만함을 보이기도 했다고 한다.

집중점검/고아수출 1위

뉴욕타임즈 등 외국의 언론이 '고아수출 1위 한국'을 떠들어대자 우리도 그래서야 어린이 해외입양문제를 역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아수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인공을 지킬 필요도 없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해외입양은 피할 수 없는 최선책일까? 어린이 해외입양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국가·부모 냉대속에 해외로 쫓겨가는 아이들

'어린이 입양'이란 제도는 사실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유독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 국내입양이 너무 부진하고 해외입양이 지독하게도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어린이가 무슨 무슨 상품처럼 특별히 해외인기가 높기라도 하단 말인가?

1년에 7천명이 미국으로

6·25이후 급증한 전쟁고아들을 수용하던 고아원 등 어린이보호시설은 그들 해당 어린이가 성장함에 따라 원생수가 감소하여 한때는 양로원, 정신박약아 시설 등으로 전용되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근 다시금 그 수용능력이 포화상태에 들어섰다는 소식이다.

보사부에 의하면 60년대 한해 1만명이 넘는 기아는 해마다 감소추세를 보여 74년에는 5천9백35명으로까지 줄었지만 그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 85년에는 1만4천2백30명(남아 6천3백83명, 여아 7천8백47명)이나 되는 어린이가 길가에 버려지게 되었다(85년을 제외하고 보사부는 7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기아와 해외입양에 관한 통계를 발표하지 않음).

이러한 기아는 미혼모로부터 버려지거나 아니면 가정불화, 경제적 빈곤에서 오는 천천 포기로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85년에는 2천8백85명, 86년에는 2천9백2명의 어린이가 국내입양되었다. 나머지는 소수의 연고자인도를 제외하고 대부분 아동보호시설에 수용되거나 해외로 입양된다.

이렇게 해마다 기아가 증가하여 86년에는 전국적으로 2만6천1백17명의 어린이가 2백7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과밀수용되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77년 이후 관계 기관과 언론기관을 동원, 범국민적 국내입양운동을 벌였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못되었던 만큼 그 실적은 저조했다. 처음엔 약간 증가하여 80년 3천6백57명의 국내입양실적을 기록했지만, 곧 다시 하락하여 86년에는 2천9백2명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반대로 해외입양은 날로 증가하여 한해 7천여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숫자가 '추정'되고 있는 이유는 86년 6천2백54명의 한국 어린이가 미국에 입양되었다는 미국이민국의 통계외에 실제 해외입양규모는 공식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어쩌다 우리의 해외입양사업은 날로

변창, 세계 1위의 고아수출국이 되었는가? 외국의 부모들은 해외에서까지 어린이를 입양해보려고 많은 돈을 쓰면서도 몇년씩이나 기다려야 겨우 차례가 온다는데 왜 한국에서의 국내입양실적은 그토록 저조한가?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더 추진"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의 복지정책 부재에서 온다. 우선 법률적으로 살펴보자.

우리나라와는 달리 다른 나라에서는 해외입양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미국을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입양은 허용하지만 미국의 어린이가 해외로 입양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또 북한을 비롯한 몇몇 제3세계 국가는 아이수출을 엄격히 규제하며, 영국이나 일본 같은 국가는 아이의 해외입양 자체를 금지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거꾸로 70년대까지만 해도 해외입양기관에 대해 적용하던 쿼터제-국내입양실적에 따라 해외입양을 허용-을 오히려 폐지, 82년 이후 해외입양은 사실상 완전 자유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해외입양은 76년 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인가된 해외입양기관 즉 홀트아동복지회, 대한사회복지회, 한국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 4개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뤄진다. 그밖에 전국 각 시·도의 공·사립아동상담소, 영아시설들이 국내입양을 알선한다.

홀트아동복지회 등 해외입양알선기관은 대체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형태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부보조, 후원회 또는 외국기관의 원조에 부분적으로 의존하며 대부분 외국의 입양기관과 연결된 해외입양사업에서 그 재정적 기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입양기관들은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에 총력을 경주한다. 국내입양으로는 10~20만원 정도의 기부금을 받고 있는 데 비해 해외입양으로는 그 몇배, 몇십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8일 미국의 「프로그래시브」지가 밝힌 한국의 입양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한 입양아동을 원하는 미국의 양부모는 5천달러(약 3백60만원)를 지불한다. 그중 한국의 입양기관에는 2천달러, 미국의 입양기관에 2천달러가 지불되며 1천달러가 미국으로의 호송비용으로 쓰인다. 그러나 또 입양기관은 호송인 1명에게 보통 3~4명씩의 아이를 맡김으로써 항공료로부터 이익을 얻기도 한다.



50년대 말 미국으로 입양된 전장고아 영환. 크라나오날날. 전장도 없는 이 영이 전 고아수출 1위인가?

이렇게 실속있는 해외입양사업을 둘러싸고 이들 입양알선단체들끼리는 입양아동을 구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는 한 상담원은 "입양기관에서는 수익성 없는 국내입양은 형식적으로 추진할 뿐이며 가능한한 아동을 해외입양으로 확보하려 한다"고 털어놨다.

해외의 주문이 쇄도하자 입양단체 상담원들은 각 산부인과 병원과 조산원으로 파견되어 입양아동을 끌어오는 일이 주업무가 되었다. 또 입양단체는 지방 여러곳에 지사를 설립하기도 한다. 신생아확보를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산부인과 의사, 간호원, 조산원, 입양단체간에는 금품수수 등을 둘러싼 밀월체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이제는 공공연한 비밀이라 한다.

부모에게 아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하는 것이 상담원의 역할이 되고 있는 가운데, 딸 많은 부모가 또 딸을 낳았을 때 경제적 궁핍을 이유로 해외입양시키는 사례, 경제력이 있더라도 정막아를 낳으면 해외입양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미혼모의 천권포기는 더욱 당연지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는 동안 해외입양사업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 점차 이익사업화·비대화해졌다. 따라서 아이들은 태어나기가 무섭게 해외로 보내

지며 그 어린이의 미래에 대해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는 것이다.

먼저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야

좀 다른 측면이긴 하지만, 해외입양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기 위해서는 먼저 버려지는 아이가 줄어들어야 한다.

1984년 한국여성개발원의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교육 정도가 낮을수록, 결혼가족의 성원일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부모의 성태도가 폐쇄적일수록, 그리고 본인의 성태도가 개방적이고 피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미혼모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성교육의 부재로 피임에 대해 무지하거나 적어도 임신 초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많은 미혼모들이 경제적 곤궁으로 키우지 못할 자식을 낳아 결국은 해외입양에서 그 탈출구를 찾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개인의 무지나 책임일 수 없다. 나이 어린 여성노동자의 경우 임신 인준 앞에서도 중절비용이 없어 출산으로까지 전진되는 사태도 있다. 진정한 복지정책의 수립, 건강한 사회를 꾸리기 위한 교육기관·직장에서의 교육, 특히 젊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시급하다.

대를 잇기 위한 국내입양도 문제

한국의 부모들이 혈연관계에 몹시 집착해 있는 것도 국내입양이 부진한 중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의 부모들은

집중점검/고아수출 1위

대개가 "가문을 잇기 위해" 아이를 원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백발이여자를 통해 서라도 아이를 얻으려 하거나, 10개월간 임신한 것처럼 가장하여 병원에서 바로 신생아를 입양해 간다. 이렇게 자신이 낳은 아이로 위장하기 위해 입양을 비밀로 하고 갓 태어난 신생아를 원하며 아이의 용모, 생부모의 학력을 따지는 데다가 아이의 혈액형까지도 부모에게 맞추려 하기 때문에 그만큼 국내입양의 폭은 좁아진다. 또 이런 과정에서 당연히 여아의 입양은 더욱 어려워진다.

미혼모도 뒤통수를 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는 사회가 미혼모와 그 아동에 대해 가지고 있는 심한 편견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의 경우 미혼모라도 당당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사회적·정책적인 노력이 기울여지며 미혼모나 미혼부의 아이는—혼자 키우기 때문에—탁아소 등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에는 아직 미혼모보호를 위한 법적 조항조차 전무한 실정인데, 모자관계를 보호하는 모자복지법의 수혜 대상에 미혼모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며 미혼모의 임신중절·분만시에도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조항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월 24일 여성개발원이 내놓은 모자복지법 시안은 이런 따가운 눈총을 감싸안으려는 시도라고 보여진다. 물론 그 법안이 진정 내용을 제대로 갖춘 것인지도 과연 실현될 것인지도 좀더 살펴 봐야 하겠지만.

'고아수출 1위'라는 충격적 사실은 이처럼 해외입양의 구조, 미혼모 문제라는 이 사회 복지정책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다. 심지어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한다.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사업으로 번 수익금이 사적으로 오용되지 않고 미혼모시설 등 사회사업대책금으로 쓰일 수는 없을 것인가?'

본회 회장인 이효재교수는 "경제성장의 퇴단길에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저소득층·노동자가족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하여 부모의 카출현상이 날로 증가, 기아들이 수없이 생겨나고 있다"고 말하고 미혼모나 가솔부녀의 문제를 성계방의 종조에서만 그 원인을 찾거나 또 해외입양의 책임을 그들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려서는 안되며, 사회구조적으로 이들이 전혀 보호받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 이제는 우리 사회안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



지금껏 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세계에서나 알고 지내는 줄 알았던 '돈봉투'가 점점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 돈봉투 문제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글을 발표해 주목을 끈다. 6월말 시판된 '주름나무'라는 책은 학생들 스스로가 교육문제에 관해 쓴 글들인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설문조사 결과로서 서울 시내 고등학생 1백50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지면상 약간 요약했다: 편집자주

- ③ 선생님의 관심 차이 / 6명
- ④ 일상화·보편화 / 5명
- ⑤ 별 영향 없다 / 21명
- ⑥ 기타 / 2명
- L. 모르겠다 / 44명 (35.2%)

9. 돈 때문에 선생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다면 그 생각의 변화를 써주십시오.

- 7. 응답자 / 82명 (65.6%)
- ① 선생님 자질이 없다 / 11명
- ② 경멸·불신 / 11명
- ③ 존경할 수 없다 / 10명
- ④ 더럽다·치사하다 / 10명
- ⑤ 나쁘다·싫다 / 8명
- ⑥ 세속적이다 / 6명
- ⑦ 이해한다 / 3명
- ⑧ 우습게 보인다 / 2명
- ⑨ 기타 / 4명
- ⑩ 변함없다·상관없다 / 17명

L. 모르겠다 / 43명 (34.4%)

10. 돈자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써주십시오.

- 국민학교에 이 일로 학급회의가 있었는데 분위기 보다는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 중학교에 우리반 아이가 결석제를 한 봉투에 넣어서 갖다드리니까 "아이 뭐 이런 거를"하면서 받으셨다.

- 어떤 아이 점수(실기)가 확 상승.
- 선생님과 학부모 사이에 받는다 안받는다 실랑이 하다 복도에 파란 돈이 떨어진 적이 있었다.
- 중3때 담임이 돈을 바라보는 눈치를 자주 준 적이 있었다.
- 국민학교때 친구 어머니가 수업시간에 오셔서 선생님이 잠깐 나가셨는데 복도에서 해기하시던 선생님이 난색을 표시하며 들어오셨다. 그 어머니는 그냥 집에 가시고 그 친구는 무척 참피해했다.
- 선생님이 받은 돈으로 60권의 책을 사서 아이들에게 나누어주었다.

- 금액이 작다고 6학년 때 편히 쓴다는 일.
- 어떤 어머니께서 체육선생님 생신이라며 제익 속에 5만원을 넣어 학생(자식)을 통해 전해주려 했으나 그 학생은 제익을 갖고오자 강수에게 주어버림.
- 어느 시골학교에서는 야과서 결석을 했는데 그 것 때문에 학급 점수가 달라진다고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을 보았을(학급 점수가 월급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 국민학교때 나와 친한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무척이나 잘사는 아이였다. 그런데 어느날 부모님 면담이 있던 날 그 친구는 나에게 "넌 얼마나 드렸나?"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때서야 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와는 거리가 멀어졌다.

- 국민학교때 친구가 반장이 되고 또 시험 볼 때마다 그 친구의 답안을 고쳐줌.
- 중3때 일반 담임선생님이 평소 차갑고 안좋은 것 같았는데 임시문제로 엄마들이 와서 손지를 주어도 받지 않았을 때 그 선생님이 달리 보였고 반면에 우리 담임선생님은 엄마가 손지를 안 드리니까 굉장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을.

11. 돈자에 대해 교육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7. 긍정한다 / 17명 (13.6%)
- (이유) ① 부모의 관심, 성의, 감사 / 7명
- ② 교사의 월급이 적기 때문 / 4명
- ③ 자본주의 사회니까 능력껏 / 3명
- ④ 기타 / 4명 3
- L. 부정한다 / 83명 (66.4%)

“아이, 뭐 이런 걸”

정희철 (고교 2학년)

1. 손지를 처음 안 것은 언제입니까?

- 7. 국민학교 / 86명 (68.8%)
- L. 중학교 / 31명 (24.8%)
- 2. 고등학교 / 3명 (2.4%)
- 3. 기타 / 5명 (4.0%)

2. 손지를 처음 알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 7. 친구의 경우를 통해 / 91명 (72.8%)
- L. 본인의 경우를 통해 / 19명 (15.2%)
- 3. 기타 / 15명 (12.0%) (메스컴 등)

3. 부모님께서 선생님께 손지를 전달해준 사실을 본 인에게 이야기해준 적이 있습니까?

- 7. 있다 / 50명 (40%)
- L. 없다 / 75명 (60%)

4.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 7. 5만원 이하 / 23명 (18.4%)
- L. 5~10만원 / 8명 (6.4%)
- 3. 10만원 이상 / 16명 (12.8%)
- 4. 모르겠다 / 70명 (56.0%)
- 5. 기타(물품) / 8명 (6.4%)

5. 부모님들이 선생님께 드리는 손지 전달 방법을 알고 있는 대로 써주십시오.

7. 응답자 / 98명 (78.4%)

① 장소

- 학교(직접 찾아와서 면담식, 학부모회의, 학생을 통해 등) / 53명
- 학교 외(음식점, 다방 등) / 6명

② 방법

- 봉투에 넣어서 직접 / 30명
- 선물·책 등에 끼워서 / 8명
- 책상사이에 / 4명
- 주머니속에 / 2명
- 책상과에 끼워놓고 감 / 2명

L. 모르겠다 / 27명 (21.6%)

6. 손지의 영향력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 7. 있다 / 78명 (62.4%)
- L. 없다 / 26명 (20.8%)
- 3. 모르겠다 / 21명 (16.8%)

7. 손지의 영향력을 확인했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십시오.

7. 응답자 / 78명 (62.4%)

- ① 선생님의 태도 변화(관심, 친절, 관여, 면담, 제벌정감 등) / 50명
- ② 점수에 영향 / 11명
- ③ 반장 등을 사귀게 / 7명
- ④ 기타 / 5명
- ⑤ 영향이 없다 / 5명

L. 모르겠다 / 47명 (37.6%)

8. 손지가 학급 친구 사이에 미친 영향(교실 분위기, 교우관계)을 구체적으로 써주십시오.

7. 응답자 / 81명 (64.8%)

- ① 돈 학생이 소외되거나 사이가 멀어짐 / 35명
- ② 불신감·위화감(반 분위기) / 12명

- (이유) ① 불평등한 교육·관심의 차별 / 16명
 ② 비교육적 / 15명
 ③ 금전만능주의 / 11명
 ④ 빈부의 차별 / 7명
 ⑤ 부당한 실력 평가(공부) / 5명
 ⑥ 위화감·불신감 / 4명
 ⑦ 기타 / 7명
 ⑧ 무응답 / 17명

C. 중간·무응답 / 25명(20%)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보다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이 더 실감이 나는 조사였다. 학부모나 선생님들, 그리고 사회 전체가 '쉬쉬'하지만 실상 우리 학생들은 그 누구보다 그 속을 원히 들

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이 무서우리만치 정확한 숫자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질문 이외에 마지막으로 선생님과 우리들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기 위해 '만약 당신이 교육자의 길을 걷게 된다면 학생들이나 학부모에게서 존지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중 69.6%가 받지 않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이 내가 지금 선생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제자들도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면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지겠는가라는 답변이었다. 또 만약 당신이 선생님이라면 존

지를 건네주는 학부모에게 무슨 말을 하겠느냐는 질문에 "아이 뭐 이런 걸..."하며 받겠다는 식(25명)도 있었지만 '교직이라는 것은 신성한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학부모님이 올바르게 못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자는 진정으로 깨끗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식으로 대답하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이 있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교사가 될 즈음에는 존지 때문에 생겨나는 교사와 학생간의 불신은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적인 생각이 들었다.■

-이 사무실에만 두 분이나 상근을 하고 계신데, 시청료거부운동이 끝난 건 아니겠지요?

"물론입니다. 이곳 사무실을 찾아오는 KBS 직원의 얘기로도 종전 80%정도 걸리던 시청료가 60~70%로 줄었다고 해요. 그만큼 운동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는 얘가지요. 하지만 KBS 측의 무마공작도 워낙 집요해서 아닌 게 아니라 최근엔 '아직도 거부하는구나' '나만 안내서 피해보는 것 아니냐'는 전화가 많이 걸려옵니다"

-통합고지서가 나오는 지역에선 번거로움 때문이라도 안낼 수 없다고 하던데요.

"통합고지서 발부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내년부턴 서울 전역과 부산·광주 등 전체 가구의 42%가 적용된다는 보도도 있었지요. 통합고지서는 확실히 난제예요. 하지만 통합고지서를 분리하는 방식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통합고지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적 편의제도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서 '시청료'와 '기타 공과금'으로 분리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밖에 없지요. 미수금이 있을 때도 가능합니다. 단 매달 가야 하고 그때마다 승강이를 벌여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문제인데 여럿이 모여 번갈아 간다면 지역마다 따라선 그 지역 운동단체에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작년 방송법이 개정되면서 KBS 시청료가 아예 전파수신료로 바뀌어 이제는 법적 뒷받침이 생겼다고 징수원들은 말하더군요. 시청료를 안냈을 때의 불이익은 정말 없는 건지요?

"방송법은 이미 통과됐지만 부칙 1조에 시청료 부분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

편파·왜곡·조작·은폐보도중지

737-6891

우리는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KBS-TV 시청료거부운동위원회

KBS-TV 시청료 거부합니다.

잠깐!!

최근 본지로는 '아직도 시청료거부운동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본지는 작년 9월 '생활속의 실천'으로도 이 문제를 다룬 적이 있기에 이번엔 다시 KBS 시청료거부운동위원회에 상임연합 사무실(737-6891)을 찾았다. 편집자주

KBS 시청료거부운동

그후

인 '개악 방송법' 개정운동이 활발하니 '전파수신료' 문제는 그 여파에 따라 바뀔 거라 보며, 적어도 올해까지는 확실히 안낼 근거가 있는 거지요. 혹 독촉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강제력을 가질 수는 결코 없고 또 그런 예도 없습니다"

-방송법 개악 말씀도 하셨는데 또 항간에는 "이제 KBS도 변했으니..." 하며 시청료거부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일도 많더군요.

"KBS가 변했다는 건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외형상 그런 몇몇 변화들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관료주의의 방식이 더 교묘해졌다고 할까요. 이

점은 우리 연합에서 내는 월별 모니터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방송공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개정된 방송법은 우리의 요구였던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언뜻 진일보한듯 싶지만 실상 12명 모두를 대통령·대법원장·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어 과거 사장이 단독권한을 행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방송법 개정운동이 일어났나 보군요.

"방송법은 실제적 개선이 없는데다가 그전엔 없던 시청료를 전파수신료로 규정해놓는 등 개악 무성이었어서 현재 우리 연합에서는 반민주적법인 방송법 개정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내년부턴 시청료를 내야하는 법적 근거가 생기기 때문에도 시청료 거부운동의 힘이 여기에 모아져야 하지요. 우리 연합은 지난 6월 14일 각 정당·언론기관으로 '방송법 개정'에 대한 건의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을 다 해내기엔 이 운동을 직접 담당하여 뛰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지만 최근엔 지역적 기반을 가지려는 민주적 운동조직들과 자발적으로 맞물려가고 있어요. 국민운동 서울시지부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현재 강서양천(664-9933)·성동(468-8594)·서대문(313-4428)·성북(468-8594)·영등포(672-2888) 지부가 각각 KBS 시청료거부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료거부운동과 지역운동의 결합은 그 어느 쪽을 위해서라도 상당한 발전이라 생각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은 실제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현재 서명운동도 전개중이다 (17면 참조). 이번호에는 개정요지와 함께 개정사안중 제1장 총칙을 실는다. 앞으로 두번에 걸쳐 개정사안을 모두 실을 예정이다. 편집자주

고용평등법의 의의는 고용기회 및 근로조건에서의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제정이라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법안은 다음의 몇가지 중요한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법제정의 의의를 실현시키는데 한계를 갖는다.

1. 남녀동일임금 규정이 제외되고 있다.

근로조건 중 가장 핵심인 임금에 있어서의 남녀차별금지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핵심적 내용이 빠진 입법이다. 현재 여성은 남성의 48%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을뿐인데 이러한 차별임금의 합리적인 근거는 전혀 없다. 같은 일을 같은 시간에 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기본급에서부터 상여금에 이르기까지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이 적은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적으로 확립되어야 차별임금이 해소되어 여성의 임금수준이 높아질 것이며, 나아가 여성의 저임금에 의해 강화되는 전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동일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동일노동 동

일임금의 원칙은 ILO조약에서는 1951년에, EC지령에서는 1975년에 이미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이미 가입한 UN차별철폐협약에도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고용평등법'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정은 반드시 삽입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노동을 규정하는 자세하고도 합리적인 기준 역시 시행령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산업별 여성임금비

연도	71년	76년	80년	85년
산업별				
전산업	43.6	43.9	44.5	48.3
제조업	44.2	44.2	45.6	49.1

* 남자=100으로 했을때 여성임금비율
자료: 노동부 「직종별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

2. 성차별 행위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에는 남녀평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성차별 행위인가에 대한 정의규정과 합리적인 성차별 행위로 법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예외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

3. 분쟁의 조정 및 고용문제조정위원회의 운영이 확대, 강화되어야 한다.

법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행정기관인 고용문제조정위원회는 그 운영에 있어서 신속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1) 사업장에서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당사자로 제한한 것을 확대하여 당사자를 대신하여 근로여성 권익옹호단체도 이를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 자격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위원회에의 조정신청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는 현행법의 자율적 해결규정은 그 기간이 노동쟁의 조정법의 냉각기간에 준하는 10일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또한 고용문제조정위원회는 조정을 신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정의 효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4. 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 벌칙규정에 있어 형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법에는 제8조의 경우(해고, 정년에서의 차별과 결혼, 임신, 퇴직을 사유로 하는 근로계약해지금지)에만 2백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법실현의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모집과 채용, 교육, 배치 및 승진, 임금, 정년퇴직 및 모성보호의 조항에도 벌칙이 부과되어야 한다.

2)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시, 사용자에게 자신이 취한 조치는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정안을 제출하는 바이다.

현행법	개정내용	개정안	개정이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변경없음	

제2조(기본이념) 1. 근로여성은 경제 및 사회발전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의 출산과 양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이므로 모성을 보호받으면서 성별에 의한 차별없이 그 능력을 직장생활에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제2항 신설

제2조 제3항 신설

제2조 제4항 신설

제3조(적용범위) 1.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다.

제3조 제3항 신설

제4조(관계자의 책무) 1. 근로여성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그 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직장생활에서 발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사업주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의 복지에 대하여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근로여성이 직업인으로서 요구되는 능력을 갖도록 하는 개발활동을 행하여야 하며 근로여성의 능력발휘를 저해하는 모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근로여성복지 기본계획 수립) 1. 노동부장관은 근로여성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여성취업의 촉진에 관한 사항
나.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에 관한 사항
다. 근로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라. 근로여성의 모성보호에 관한 사항

마. 근로여성을 위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바. 기타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제1항의 기본계획 및 그밖의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여성위원회를 둔다.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여성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제4항 신설

제5조 제4항 → 제5조 제5항

제2조 1. 현행법 제2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한다.

2. 본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특정 성 또는 가족상황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달리하거나 기타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여성에 대한 모성보호는 본 법에서 말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그 조치는 본법에서의 차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3조 1. 변경없음

제3조 2. 변경없음

3.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제4조 변경없음

제5조 1. 변경없음

제5조 2. 변경없음

제5조 3. 변경없음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여성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 시행되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현행법 제5조 제4항)

현행법에는 남녀평등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행위가 성차별행위인가에 대한 정의규정과 합리적인 성차별행위로 법이 인정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하여 차별에 대한 정의와 예외규정을 명문화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를 명시함으로써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해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을 막음.

근로여성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의 현실적 시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문화함.

이달의 소식

학부모·교사가 주최한
'자살학생위령제 및
참교육 실천대회'

"아이들아, 미안하다"

"시험없는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6월 18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동송동 대학로에서는 전국교사협의회, 민우회, 주부아카데미, 한마당교육문제연구회 공동주최로 '자살학생위령제 및 참교육 실천대회'가 열렸다.

이날 대회는 자살학생 실태보고, 자살학생 유서낭독, 추도시·추도사 발표, 결의문 채택, 진혼곡의 순서로 이어졌다.

88년 5.6월에만도 18명이나 된다는 자살학생의 실태보고와 중 3 여학생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라는 유서낭독은 4백여 학부모, 교사, 학생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본회 회원 최취수씨가 낭독한 추도사, 한마당교육문제연구회원 이종란씨 등의 진혼곡에 이르러 참석자들의 슬픔과 분노는 절정에 달했고, '선생님과 학부모가 나서서 교육을 정상화시키자'는 결의문 채택으로 교육문제해결의 의지를 다졌다.

대회후 참석자들은 '자율학습·보충수업 폐지' '입시제도 개선' '민주교육 실천'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학로를 행진하기도 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도
'구사대폭력 추방'
성명서 발표

민우회 등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펼쳐지던 구사대폭력 추방운동이 점차 확산, 실질적인 방지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도서농어촌 선교위원회는 6월 25일 성명서

를 발표, '구사대폭력은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단결권을 박탈하고 인간생명을 위협하는 야만적인 폭거로서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성명서는 이외에도 구사대폭력에 대한 방지책으로 당국은 구사대폭력을 사주· 묵인하는 악덕기업주와 가담자들을 범죄단체 구성 및 폭력행위 등으로 엄벌에 처할 것, 구사대 폭력사태의 실상을 조사· 규명하고 이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일부 언론은 구사대 폭력사태를 왜곡· 편파 보도하는 태도를 시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
민우회 주최
여성조합원교실 열려

민우회는 지난 6월 11일 인천 한빛교회에서 여성조합원교육을 가졌다.

'노동조합과 여성노동자'라는 제목으로 열린 '여성조합원교실'에는 협우전자, 서전기업 등 인천지역 5개 노조의 여성 조합원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자유금융노련 전문위원인 김귀관씨의 강의와 코스모스전자의 사내 발표, 놀이와 대화의 순서로 진행됐는데 여성노동자의 차별실태와 이의 극복을 위한 노동조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강의에 참석자들은 진지한 관심을 표시.

다음 여성조합원교육은 7월 13일 부천의 부천사회문화연구소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귀동 3차 공판,
부천서측 증인들
시종일관 발뺌만 해

부천경찰서 사건 문귀동에 대한 3차 공판이 6월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옥봉환 전 부천경찰서

장, 박성룡·한희정·황병선·이강석 부천서 경찰관 등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는데 이중 옥봉환 서장은 "검찰 조사전에 미리 입을 맞춘 적이 없다"고 말했으며 한희정 형사는 "86년 6월 7일 문 피고인이 권씨를 조사할 때 이흥기 형사가 함께 있지도 않았는데 검찰에서 왜 있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 "경찰간부 누군가가 검찰에 가서 그렇게 진술하라고 시켰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발뺌만이 오고갔다.

조영환 특별검사는 이 사건을 은폐 조작한 것으로 알려진 '관계기관 대책회의' 참석자인 서동권 전 검찰총장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5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채택결정을 보류.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2차공판 때 권인숙씨에게 허가했던 피해자진술권행사는 필요한 시기에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은 방청권을 발부받은 방청객 8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다음 공판은 7월 2일 오전 9시 30분.

한국여성개발원
5 장28조
모자복지법 시안 발표

한국여성개발원은 6월 24일 모자복지법 시안을 발표했다.

5장 28조로 되어있는 모자복지법시안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9%인 '모자가족' - 남편이 죽은 경우나 미혼모·이혼모들의 가족-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안에 모자가정의 종합적 복지지원할 맡을 모자복지 사무소 설치, 생계비 아동교육비 등 복지지원금 지급, 사업자금 주택자금 등 복지자금 대부, 모자가족의 우선적 고용, 국민주택 특별분양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시안은 이들 사업을 위한 필요재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부담하도록 하며, 모자가족이 복지업무에 이의가 있을 때는 복지 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여성개발원은 28일 열린 공청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 9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촉구대회’ 여연 주최로 열려



6월 25일 오후 6시 30분 종로5가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는 한국여성단체연합(회장 이우정) 주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촉구대회’가 열렸다.

이보다 앞선 16일 여연 회원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내부 토론회에서 검토된 바 있는 개정시안이 이날 유인물로 소개되었으며 본회 이경숙 사무국장의 개정방향에 관한 강연, 세명의 ‘현장의 소리’ 발표, 결의문 채택의 순으로 이어졌다.

‘현장의 소리’에는 병원노조협의회의 한 임원, 경동산업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다 해고된 기혼여성, 그리고 현대 해상화재보험의 한 여직원이 나와 각각 여전히 강고히 남아있는 결혼피직, 파괴되는 모성, 차별임금 등을 고발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없앨 수 있는 새로운 남녀고용평등법을 요구했다. 또 대한투자신탁 여직원회장은 축사에서 발언을 신청, 자신의 직장문제와 결부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요구를 덧붙이기도 했다.

참석한 2백여명의 일하는 여성들은 이날의 촉구대회외에도 이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개정서명운동을 벌이기로 결의, 동료들에게 나눠줄 서명용지를 받아 가기도 했다.

여연, 6월항쟁 1주년 맞아 ‘최루탄추방과 백골단 폭력규탄’ 성명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은 6월항쟁 1주년을 맞이하여 최루탄추방과 백골단 폭력규탄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작년 6월 18일 여연이 주관한 최루탄 추방대회를 계승하여 투쟁의 연속을 주

장한 성명서에서 여연은 ‘정부당국의 최루탄성분의 인체 유해여부에 대한 자료 공개, 부상자에 대한 치료·피해보상의 현실화, 최루탄제조비의 국민복지비로의 전환, 백골단의 실체 즉각적인 공개, 집시법의 즉시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여연은 6월 26일 오후 4시 명동 성당에서 민동련, 서총련 등 7개 단체와 함께 ‘6월항쟁 계승·실천 범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영생애육원 사건 목사 정기섭씨 징역2년 선고

충남 아산 영생애육원에서 국민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여학생들을 번갈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목사 정기섭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합계 가는 여성』 5월호 ‘이렇게 생각한다’ 참조).

6월 13일 2시 대전법원 천안지원에 열린 이 사건의 3차 공판에는 정씨로부터 성추행당한 여학생 4명이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는데 징역 5년의 구형을 받은 정씨는 “성병·피부병검사 및 안마를 받기위한 행위였을 뿐”이라며 성추행 사실을 계속 부인했다.

시중 기독교인의 사랑실천을 내세우는 피고에게 여성의 전화, 15개의 대학생봉사자들로 구성된 ‘영생애육원 집단성추행사건 및 시설아동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항의와 야유를 퍼부었다.

이후 정기섭피고는 6월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게 된 것이다.

7월2일부터 4일까지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

오는 7월 2일부터 4일까지 ‘통일염원 범국민 평화대행진’이 열린 예정이다.

구체적 일정을 보면 7월 2일 오후 4시 동숭동 대학교에서 통일종합문화제를 열고, 7월 3일 오후 4시 임진각 자유의 다리에서 통일기원제를 열며, 7월 4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구 서울고자

이달의 소식

리를 출발, 대학로까지 인도를 따라 평화대행진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아내 명의 남편 수입 재산 절반씩 소유권 인정한다

남편의 수입으로 사들인 재산이라도 아내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등은 부부에게 절반씩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는 6월 13일 정태근씨가 부인 안영옥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가사에만 전념하는 아내는 비록 적극적인 수입을 얻지는 못하지만 가계자금을 관리하고 가정을 꾸려나가기 위해 정신적·육체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취득을 위한 자금이 남편의 수입에 의존해 형성됐다는 이유로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아내가 수입이 없을 경우 아내 명의재산이라 해도 남편의 재산으로 인정해 오던 판례를 깨고 아내의 가사업무를 남편의 수입활동과 동등한 근로활동으로 해석했다는 점에서 상당급심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

여성의 전화, 창립5주년 기념행사

창립 5주년을 맞은 여성의 전화는 6월 11일부터 18일까지를 ‘창립 5주년 기념행사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행사를 펼쳤다.

첫날인 6월 11일 오후 2시에는 명동전선상교육관 대강당에서 창립기념식을 갖고 ‘여성해방과 성폭력’이라는 주제의 공개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성의 전화 중앙위원인 손덕수씨의 주제발제를 듣고 박원순 변호사, 정소영 이대강사, 김귀균씨 등이 함께 토론하기도 했다.

6월 15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AIDS와 관광정책’이라는 제목으로 공청회가 열려 정부의 단일한 AIDS 예방대책을 규탄하고 민족생존을 위한 의지를 결집했다.

또 단오날인 6월 18일 한산대학 운동장에서는 매맞는 아내들의 비상휴식처인 ‘쉼터’ 운영 등의 사업금을 모으기 위한 ‘단오장터’가 열렸다. ■

여성민우상담실

순희씨에게 드리는 두번째 편지

퇴원하고 통원치료 중이라는 소식, 이제 '내가 왜 병신이 되어야 하느냐!'며 눈물 쏟는 횟수도 줄어들었다는 답답한 심정과 함께 산재보상과 민사소송에 대한 질문이 담긴 순희씨의 두번째 글을 받았습니다.

치료(요양보상)와 함께 받게 될 휴업급여(산재법 9조 4항, 평균임금의 60%)는,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휴업급여 청구서(노동부 비치)를 제출하면 노동부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순희씨가 원하는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서 주의할 점은 정확한 평균임금의 계산입니다. 간혹 기본급을 평균임금으로 기입하여 나중에 받게 될 장해보상과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죠. 또 장기요양일 경우, 요양기간중 임금인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 재청신청을 하여 휴업보상액도 증액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을 계산하기 위해 순희씨의 두번째 편지에 쓰여진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급: 5천6백원
산재발생일: 1988년 5월 11일
휴일특근(8시간): 6일
상여금: 연 4백%
하루도 결근 없었음
수당 없음

먼저 순희씨의 평균임금을 내보시다.

- ① 3개월간의 통상임금총액
5,600원×89일=498,400원
- ② 휴일근로수당: 시급 7백원(5,600원÷8시간)
700원×8시간×(1+0.5)×6일=50,400원
- ③ 월차수당
700원×8시간×3개월=16,800원
- ④ 연차수당

$$700\text{원} \times 8\text{시간} \times 12\text{일} \times 6 = 16,800\text{원}$$

(※ 연차수당은 1년만근의 경우 8일+근무연수 5년이면 4일 가산)

⑤ 상여금

$$5,600\text{원} \times 30\text{일} \times 400\% \times 6 = 168,000\text{원}$$

$$\rightarrow \text{평균임금} = (\text{①} + \text{②} + \text{③} + \text{④} + \text{⑤}) \div 89\text{일} = 8,431\text{원}$$

순희씨의 평균임금은 8천4백31원이므로 휴업급여는 이 금액의 60%인 5천58원입니다. 또, 치료종결후 남게 된 장해에 대한 보상인 신체장해등급에 따른 장해보상금(산재법 시행령 제13조)은 제10급 5호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2백70원분 즉 5,058원×270일=1백36만5천6백60원입니다.

일자리 재배치도 요구해야

많은 산재노동자들은 이 장해급여가 입금되어 있는 통장, 자신의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신체의 일부와 맞바꾼 이 돈을 받아내고 다시 한번 역장이 무너져 통곡하게 되지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인 민사소송을 생각한답니다.

민사소송전에 제가 권하고 싶은 방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회사와의 합의입니다. 그 이유는 산재는 노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즉 노동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사자인 노·사간에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제3자인 법원에 호소하는 일보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 합의의 내용은 보상액을 포함한 산재노동자가 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후대책이

될 것입니다. 보상액은 현 산재보상액의 2백-3백%나 민사보상액의 80% 정도면 매우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산재로 인한 공포에 가까운 실직, 뒤를 잇는 가계의 압박, 가정의 안정성과도 등을 고려한 산재노동자의 노동력에 알맞는 일의 재배치는 기업이 꼭 맡아야 할 사후대책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산재노동자가 국가경제건설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생산성향상을 위해 지구상 최장의 노동시간과 격심한 노동강도의 강동을 온몸으로 견뎌온 바로 그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직시할 때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노동자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민사소송 위해 증거자료를 꼭 확보

하나 대단히 실망스러운 현실은 이 합리적인 합의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재판의 절차가 보통노동자에게 길고 까다롭다 하더라도 자신의 빚겨진 권익을 찾기위해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겠지요.

민사소송은 산재노동자 자신이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의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은 우선 인지대 정도만 있어도 시작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재판이 끝나고 지급하면 됩니다.

처음 사고경위와 산재로 인해 입게된 수입액 등을 정리하여 소장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고경위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인, 증거자료(순희씨 경우 안전망이 없는 밭서기 사진, 고장난 기계를 계속 작동케한 작업지시서, 내용 등)는 빨리 확보해둘수록 유리합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측은 서둘러 고장난 기계를 정비하고 미비된 안전장치를 보완하거나, 동료들을 회유하는 등의 잔치를 부리니까요.

소장제출 한달후쯤 재판이 시작되면 법원(1심, 지방법원)에서는 종합병원에 신체감정의뢰, 증인신문(때로는 현장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판결을 내립니다. 이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사측의 항소(2심, 고등법원)는 기각되며 만약 항소하더라도 판사가 선고한 보상금의 1/2 혹은 전액을 우선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받은 민사보상액은 산재보상중 휴업급여와 장해급여가 제해진 것으로 이는 하나의 재해에 대해 이중적인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면관계상 민사보상액의 계산과 판례는 실지못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직접상담을 기다립니다) ■

산재때는
평균임금
계산을 정확히



지난호에 실린 상담 '손가락이 찢렸어요'에 이어 이번호에는 그 구체적 법적처리를 실는다: 편집자주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 원한다

'민주화'라는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낯설지 않은 말이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많은 사람들의 '민주화'에 대한 외침과 희생과 싸움으로 얻어진 작지만 귀중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희생과 싸움의 댓가는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수배당하고 이유도 모른 채 잡혀가고 고문당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과정이 있었다.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최근 위암으로 진단된 김병근씨의 구치소에서의 부당한 대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특히 지독한 고문의 수법과 방법은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발달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이 사실이 사실로서 일반에게 인식되고 가해자에 의해 인정된 것은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남영동』은 실제로 참혹한 고문을 당했던 당사자인 김근태씨의 고문 및 옥중 기록이다. 이 책은 악명높은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의 경악스러운 고문 및 조사과정, 옥중에서도 더욱 더해가는 가족과 아내에 대한, 나아가 민주화에 대한 뜨거운 애정, 육체적·정신적 폐허



김화령 (서울 마포구 성산동)

상태에서 다시 깨어 일어나는 한 인간의 새 삶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

책을 펼치면 김근태씨가 쓴 서시 '눈부서 눈이 부서'가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뒤 제1부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원한다'에는 구속되기 전의 상황과 물고문과 전기고문을 번갈아 십여차례나 당해야 했던 인간도살장 남영동에서의 한낫한 고문과정, 재판과정에서의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사실임에도 믿기에는 너무나 엄청난 차라리 부정하고 싶은 기록에 대해 누구라도 분노하고 애통해하지 않을 수 없다.

제2부 '민주화여, 민주화여, 민주화여!'에는 세곳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쓴 가족과 친자에게 보낸 편지와 민청련의장으로 있을 당시 「민주화의 길」에 실렸던 주요 글들이 실려 있다.

고문이 행해진 것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감히 어떻게 한 인간을 그토록 철저히 파괴시키는 잔인함이 행해질 수 있는지 고개가 설레설레 저어진다. 이것은 단지 그 수많은 고문피해자 중 단 한사람의 기록일 뿐이다. 더 많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문에 시달렸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만히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고 앉아 있는 것은 크나큰 잘못이라.

진정한 민주화는 이런 야만적이고 잔인한 비인간적인 고문행위와 고문행위자가 철저히 제값을 치르고 진짜로 고문이 발붙이지 못하는 사회가 될 때야 이루어질 것이다. ■

날 말 맞 추기



〈가로열쇠〉

① '우리의 소원은 ○○ 꿈에도 소원은 ○○' 민족의 염원을 나타내는 이 노래가 국민학교교과서

에서조차 없어졌다고 하지요. ④ 한여름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아서 일어나는 방.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이 방을 조심해야죠. ⑥ 사방으로 날아 흩어짐. ⑦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남. ⑪ 시기하고 미워함. 칠거지악의 하나였죠. ⑬ 옛날 글씨 보내는 공문을 가진 사람이 타던 말. ⑮ 내용이 충실하지 못함. 우리나라엔 ○○기법이 많죠. ⑯ 따름통~물리만 수학기를 통조. ⑰ 특히 방갈에 여자에게 치근거린 남자. 어리석고 뻔한 사람들이죠. ⑱ 일송정 푸른숲은 홀로 늙어갔어 도~ 이 노래의 제목은? ㉑ 반함없이 지키는 의지. 무슨일을 하든 이것이 있어야지요. ㉓ 논법 사이. ㉕ 오래 계속되는 성질. ㉗ 거의 같음.

〈세로열쇠〉

① 더운 여름에는 바람이 잘 통해야지요. ② 항상 매화꽃을 남기곤 했던 의적. ③ 계산을 자동적으로 발리하는 기계. ④ 1904년 이용구·송병준 등이 조직한 친일단체. ⑤ 아픈 사람이 찾아오는 곳. ⑥ 최근 정권의 시녀 노릇에서 벗어나자 한다는 법관들의 서명이 있었죠. ⑦ 누이의 자식. ⑧ 말을 타고 하는 싸움을 모방한 어린이들의 놀이. ⑨ 소와 싸우는 사람. 스페인이란 나라가 연상되지요. ㉑ 몹시 지쳐 나른하게 됐을 때 이런 표현을

쓰지요. ㉓ 노동할 능력과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취업을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이 많아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요. ㉕ 뭇골씨 쓰는 종이. ㉗ 마을이 서로 통하여 모이는 무리. ㉙ 재산을 당했을 때 구제해 주는 사람. ㉚ 모나리자의 ○○. ㉜ 간담하고 위엄. ○○식당.

〈지난호 정답〉

●정답은 다음호에 실립니다. 7월 25일까지 접수된 정답엽서를 주형, 그중 다섯분에게 6개월치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지는 없습니다.

무	더	위	태	평	소
성	풍	지	박	산	문
영	토	당	장	교	
화	사	대	리	통	치
광	기	소	난	도	
동	란	고	미	곤	
부	난	한	아		
언	해	장	거	리	전

‘직장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4개월에 걸친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의 활동내용을 평가해 보고 직장내 폭력 근절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그마한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3월 9일 발대식을 출발점으로 하여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직장내 폭력중 구사대폭력추방은 운동의 진행과정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절감되어 많은 민주화운동단체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많은 생산현장에서 정당한 몫을 찾으려는 노동자들이 폭력에 짓밟히는 현상이 횡행했습니다. 구사대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휴·폐업, 직장폐쇄, 부당해고 등의 간접적 폭력도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했습니다.

이제 직장내 폭력은 안타까와하고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차원에서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폭력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대처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까지의 운동을 계승·발전시키고자 본회는 ‘직장내 폭력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본회가 ‘올해 폭력

의 특징과 문제점’을 내용으로 기초발제를 한 후 폭력근절방안에 대한 각계 의견-노동, 여성, 법조계-발표와 질의, 토론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당국에 보내는 폭력근절 촉구문 채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생산현장의 진정한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분들의 적극적 참여와 의견개진을 바랍니다.

- 일시: 1988년 7월 7일(목) 2시
- 장소: 한국기독교장로회선교교육원
- 문의: 313-1060

이날 백서도 발간됩니다

‘직장내 폭력추방운동’의 백서가 늦어진 데 대해 사과 말씀드립니다.

6월 중순께로 예정된 백서발행이 곳곳에서 터지는 구사대폭력사태를 함께 담아내느라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백서는 7월 7일 ‘직장내 폭력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 자리에서 선보입니다.

- 가격: 1천원
- 문의: 313-1060

아리랑택



「함께 가는 여성」에서 알려드립니다

- 본 신문의 발행일은 매달 1일입니다.
-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직장 이야기〉(이런 모임) 〈독자독후감〉(「함께 가는 여성」을 읽고) 등의 난은 독자의 참여로 채워지는 난입니다. 원고를 직접 작성해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본 편집실로 사건을 알려 취재를 맡겨주셔도 됩니다. 자신이 겪은 일, 자신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사회사건에 대한 견해 등 내용과 형식에 상관없이 어떠한 원고도 환영합니다.
- 원고 등을 우송하실 분은 120-0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0-6 한국여성민우회 「함께 가는 여성」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 가는 여성」을 받아보시려면

- ① 본 신문은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실

이나 전국 몇몇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가격은 1부에 5백원).

② 본 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시려면 본회의 ‘신문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연회비 7천원). 아래의 온라인이나 지로를 통해 송금하신 후 전화로 본인의 성함과 주소, 연락처 등을 말씀 해주시면 매월 신문을 우송해 드립니다.

- 온라인 송금하실 곳
상업은행 109-08-195935 흥영주
제일은행 277-20-195962 흥영주
- 지로창구 이용
가까운 은행 어디든지(한국은행·산업은행 제외) 지로창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본회 번호: 7519497). 이용하실 분은 구독신청과 함께 말씀해주시고, 우편으로 지로용지를 보내드립니다.

- ③ 자세한 문의는 313-1060

한국여성민우회 상담실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생산노동 현장에서 우리 여성들이 안고있는 고민을 안심하고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되고 그 가운데 발굴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여성문제: 연애, 결혼, 성문제, 그외 성차별적 문제

② 노동문제: 임금 및 각종 수당, 해고, 산업재해 및 노동조합 활동과 교육에 관한 문제

③ 교육문제: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 느끼는 자녀양육, 학교 교육에 관한 문제

상담시간은 월·수·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면접상담을 원칙으로 하지만 우리 여성들이 처해있는 여러 현실을 감안해서 서신상담과 전화상담(313-1060)도 합니다.